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예산·회계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남양주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남양주시체육회는(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체육회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등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체육회 사업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지원시책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하며 체육회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과 회계 및 계약업무 등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¹⁾, 제36조(예산의 편성)²⁾ 및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하고 한해 지출한 예산을 총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체육회 「회계규정」 제28조(지출의원칙), 제29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³⁾, 제32조(세금계산서 등)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⁵⁾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체육회는 예산 및 결산,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가. 국도비 예결산 심의 미실시 (주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연도 시작과 종료를 위해 실시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시비와 시비 매칭되는 국도비 일부 예결산을 심의·

-
-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 5)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⑥ “생략”

의결하고 국도비 일부는 심의·의결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체육회는 2020년도 경기도■■■■ ★★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표1]과 같이 발생한 태권도 심판수당의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으며,

또한 2022년도 경기도■■■■ 결선리그에서 버스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표2]와 같이 A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회계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표1] 수당 원천징수 미공제

사업명	지급내용	산출기초	금액
2020 경기도■■■■	심판비	150,000원 × 6명 × 2일	1,800,000
2020 경기도■■■■	심판비	150,000원 × 8명 × 1일	1,200,000

[표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명	지급내용	업체명	산출기초	금액
2022 경기도■■■■	버스임차비	A업체	1,000,000원 × 1대 × 1일	1,000,000

다. 보조금 집행서류 증빙 부적정 (주의)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 등 다수의 국도비 사업에서 [표3]과 같이 운동용품 등을 제작 및 구매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B업체(대표: 유●●)와 C업체(대표: 안●●)과의 거래에서

폐업한 업체의 견적을 증빙하여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증빙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3] 보조금 허위 증빙

사업명	지급내용	업체명	타견적업체	금액
2020 □□□□	운동용품	C업체	C-1업체 (폐업: 2016.09.30.)	3,800,000
2021 ■■■■■■	현수막	B업체	B-1업체 (폐업: 2021.06.30.)	(21.08.25집행) 300,000
2021 ■■■■■■	운동용품	C업체	C-1업체 (폐업: 2016.09.30.)	5,155,300
2021 ■■■■■■	운동용품	C업체	C-1업체 (폐업: 2016.09.30.)	3,380,340
2021 ■■■■■■	운동용품	C업체	C-1업체 (폐업: 2016.09.30.)	468,720
2021 ■■■■■■	운동용품	C업체	C-1업체 (폐업: 2016.09.30.)	597,260
2022 ■■■■■■	배너	B업체	B-1업체 (폐업: 2021.06.30.)	160,000
2022 ■■■■■■	배너	B업체	B-1업체 (폐업: 2021.06.30.)	85,000
2022 ■■■■■■	현수막	B업체	B-1업체 (폐업: 2021.06.30.)	120,000
2022 ■■■■■■	배너	B업체	B-1업체 (폐업: 2021.06.30.)	1,070,000
2022 ■■■■■■	현수막	B업체	B-1업체 (폐업: 2021.06.30.)	120,000
2022 ■■■■■■	현수막,배너	B업체	B-1업체 (폐업: 2021.06.30.)	480,000

[조치사항] 남양주시체육회장

다음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회 공정감사실 및 해당 부서를 통해 이행결과를 제출하기 바라며,

향후 국도비 예결산 및 보조금 집행·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숙지를 위한 임직원의 예산·회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남양주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남양주시체육회는(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50%(경기도 25%, 남양주시 25%)를 투입하여 총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남양주시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지방체육회)⁶⁾ 및 「정관」 제2조(목적)에 따라 운영하고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배정인원과 예산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총 335명을 배치하고 남양주시에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호~6호 “생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하지만 체육회는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원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자로 입사한 생활체육지도자 이후 새로운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남양주시체육회장

국도비를 포함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인원 12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체육회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2023년 12월) 이내로 결원이 발생한 인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이를 본회 공정감사실과 지역진흥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남양주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남양주시체육회는(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회계처리는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회계규정」 제5조(회계관직 지정), 제6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제62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을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운동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SGI서울보증을 통해 [표4]와 같이 회계관계직원 일부가 가입되어 있으나 체육회 「사무전결처리 규정」 제3조(전결처리 원칙), 제4조(전결대상사무)에 따라 별첨1의 전결처리

사항에 맞도록 회계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표4] 회계관계직원 보증보험 가입현황

증권번호	직책	성명	보험기간	비고
100-000-2023-****-****	회장	윤**	2023.06.19. ~ 2023.12.31.	
100-000-2023-****-****	팀장	최**	2023.06.19. ~ 2023.12.31.	
100-000-2023-****-****	담당	김**	2023.06.19. ~ 2023.12.31.	

하지만 「사무전결처리 규정」 별첨1에 따르면 예산 및 결산, 계약, 지출 등의 회계처리 다수의 전결권자인 사무국장의 회계보증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이다.

[조 치 사 항] 남양주시체육회장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사고에 대비하여 체육회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있는 회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계보증보험 가입하여 본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